**[알면 돈이되고 모르면 독이되는 저작권 이야기\_One Point\_요약집]**

*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 
  1. **가장 시급한 조치로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2. **일정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할 수 있다.**
  3.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설명** 
  1. **최소한의 창작성으로 족하다.**
  2.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3. **소설이나 영화의 제목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원칙적으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 **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학술적인 내용 그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어문저작물에 대한 설명** 
  1. **소설/시/논문 등이 대표적인 어문저작물이다.**
  2. **문학적 가치는 필요하지 않다.**
  3. **카달로그나 전화번호부 등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4. **강연이나 연설과 같은 구술에 의한 것도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설명** 
  1. **악곡과 가사가 결합한 저작물로서 즉흥연주나 가창도 보호된다.**
  2. **콘서트 등의 연주나 가창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3. **음악저작물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4. **악곡은 멜로디/리듬/화음으로 구성되지만 음악저작물의 침해여부는 이러한 악곡의 각 부분이 침해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설명** 
  1.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다.**
  2. **복제성과 독자성이 필요하다.**
  3. **보통 응용미술저작물을 상품화 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4. **복제성과 독자성이 요구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창작성도 요구된다.**
*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설명** 
  1. **법원은 팻독 사건에서 응용미술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2. **법원은 히딩크넥타이 사건에서 넥타이 도안의 응용미술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3. **응용미술저작물은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4. **십자가는 그 문양이 교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개 성혈을 의미하는 붉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점 및 장미꽃 문양은 국내외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묵주반지에 새겨진 통상적인 장미꽃 문양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창작성과 독자성 부정하였다.**
* **2차적 저작권에 대한 설명** 
  1.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권을 말한다.**
  2.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과 새로운 창적성이 있어야 한다.**
  3.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2차적 저작권은 성립한다.**
  4. **법원은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애마부인5 사건).**
* **2차적 저작권에 대한 설명**
  1.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바 도작(盜作), 표절(剽竊)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2.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이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3.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 2차자적 저작권의 침해임과 동시에 원저작권의 침해도 된다.**
  4. **중년여인을 소재로 한 이른바 성인용 소설 또는 성인용 영화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생활 등을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말을 상징으로 도입하는 등의 패턴을 취하고 있음은 흔히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정도의 유사점은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저작권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 
  1.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아이디어 제공자나 보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저작물에 저작자로 실명이나 이명이 표기된 자는 저작권자로 추정된다.**
  3. **대필로 저작된 경우 대필자가 저작권자이다.**
  4.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에 의해 이전 가능하므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 **공동저작물에 대한 설명** 
  1. **공동저작물은 둘 이상의 저작물이 아닌 하나의 저작물이다.**
  2. **공동저작물은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합저작물과 구별된다.**
  3.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 사이에 만화의 제작에 있어 전개방향이나 기획의도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경우 제작된 만화는 공동저작물이 아닌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다.**
  4. **하나의 저작물의 완성에 복수의 자가 관여하였으나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 가능한 경우의 저작물을 결합저작물이라 하는바,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 가요/오페라/뮤지컬 등에서의 작곡가와 작사가 또는 삽화가 들어 있는 신문소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공표권에 대한 설명** 
  1.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2. **원저작자의 동의 얻어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4. **불법적으로 된 공표도 공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 **성명표시권에 대한 설명** 
  1. **저작물 등에 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2. **무명으로 공표할 권리 포함한다.**
  3. **무단으로 저작자의 성명 또는 칭호를 변경/은닉/삭제하는 것은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의 침해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제12조 제2항 단서)**
* **저작재산권에 대한 설명**
  1. **컴퓨터 파일 형태의 저작물을 하드디스크나 CD와 같은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
  2. **판매용 음반을 음악감상실에서 재생시키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
  3. **음악이나 강연을 녹음∙녹화∙음반취입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
  4. **개정법은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을 공연에 포함시켰다(법 제2조 3호, 32호) 따라서 백화점, 호텔 등에서 판매용 음반의 구내 사용은 공연에 해당한다.**

**-----------------------------------------------------------------------------------------------------------**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설명** 
  1. **원고는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원고는 자신의 저작권 중 어떠한 권리가 침해당한 것인가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3. **원고는 자신이 만든 것이 저작물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4. **원고는 자신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다.**
*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는 피고에 대한 설명** 
  1.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2. **피고는 저작권 제산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3.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4. **피고는 저작권 침해가 무과실에 의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저작권법 상식에 관한 설명** 
  1. **만화책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콘서트 장에서 무단으로 가수가 노래부르는 모습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음원을 표절한 경우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p2p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업로드를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됨.**
*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설명** 
  1.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문화 및 산업발전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3.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4. **법원은 하이트맥주 광고카피 사건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광고문구는 왹국의 광고문구와 유사하며,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독창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 침해를 부정하였다.**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설명** 
  1. **상대성 이론이나 피타고라스 법칙 같은 학술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희랍어 분석방법론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금**
  3. **영화나 드라마의 주된 줄거리는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차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
  4.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
  1. **지도/설계도/각종 서식/매뉴얼 등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기능적 저작물은 용어나 표현방법이 정형화 되어 있어 최소한의 창작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3. **법원은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에서는 창작성을 인정하였으나 3D지도 사건에서는 창작성을 부정하였다.**
  4. **아파트 평면설계도의 경우 동일한 아파트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나 사정만으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 
  1. **기능적 저작물은 용어나 표현방법이 정형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2. **3D형태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그 방법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3. **어문저작물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법원은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은 모발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피사체의 선정 및 촬영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진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대한 설명**
  1. **만화, TV, 영화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을 말한다.**
  2. **미국과 우리나라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부정하고 있다.**
  3. **법원은 마시마로/피구왕 통키/ 닌자거북이/미키마우스 등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4. **대법원은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 
  1. **캐릭터의 저작물성은 주로 시각적 캐릭터가 문제되고 있다.**
  2. **응용미술저작물은 다른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어야 한다.**
  3. **응용미술저작물은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법원은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보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 **편집저작권에 대한 설명** 
  1.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3. **소재 자체가 저작물일 필요는 없다.**
  4.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에 변형을 가져오는 반면에 편집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의 변형 없이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편집저작권에 대한 설명** 
  1. **법원은 낱말을 먼저 익힌 다음 어느 정도 낱말이 익혀졌을 때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이어서 문장을 학습하도록 하는 이른바 순차학습의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글자교육카드의 편집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2.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3. **인터넷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이나 메뉴구성, 콘텐츠 구성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4. **법원은 공인중개사 시험출제경향 분석, 합격자 현황, 수험준비 전 유의사항, 일반적 학습순서, 객관식 문제풀이요령, 검정고시 기간별, 과목별 합격전략, 시험직전 체크항목 기재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정보를 게재한 것이거나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의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분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공동저작물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1. **저작인격권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나,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성립을 방해하지 못한다.**
  2.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특약이 없는 한 이바지 정도에 따라 배분하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
  3. **공동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침해금지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다. 종전에는 사망 후 50년까지였으나 개정법은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하고 있다(제39조 제2항)**
*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 
  1.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한다.**
  2. **업무상 작성하여야 한다.**
  3.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4. **법원은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는 공표권이다.**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는 성명표시권이다.**
*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설명** 
  1.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2. **동의를 얻지 아니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3. **제3자에 의하여 붙여진 제호는 동일성유지권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한다.**
  4. **제호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이 다르면 제호 동일해도 저작권침해가 부정되는 것이다. 법원도 ‘가자 장미여관’ 사건에서 시집 제목 사용하여 별개 내용의 시나리오와 영화제작을 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저작인격권에 대한 설명** 
  1.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을 양도한 경우 공표가 추정된다.**
  3.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수하여 일정한 기간 미공표의 상태로 관리하는 토플시험문제를 학원 강사가 토플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암기한 후 이를 그대로 옮기면서 해설을 덧붙인 책을 발간하는 것은 공표권의 침해가 된다."**
  4. **법원은 음악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곡의 일부를 절단하여 전송하는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곡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발췌, 변환, 저장한 후 구매자에게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저작재산권에 대한 설명** 
  1. **인터넷방송은 동시성이 없어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
  2. **화가의 작품을 매수한 경우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원본에 의해 전시 가능하다.**
  3. **(2)의 경우라도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하다.**
  4. **저작권법은 초상권의 침해를 우려하여 위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배포권에 대한 설명** 
  1.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권리이다.**
  2.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권가 배타적 배포권을 잃는다."**
  3. **②의 경우를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
  4.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의 영리적 대여에 대해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설명** 
  1.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2. **편집저작물은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편집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3.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되 실질적 유상성이 있어야 한다.**
  4. **원저작물로부터 아이디어 등을 얻는 것에 그치거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면 새로운 저작물이지 2차적저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설 ‘테레사의 연인’을 읽고 그에 대한 감흥을 음악으로 만든 가요 ‘고독＇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 
  1.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은 연설자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하다.**
  3.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이용한 영어교재 제작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4. **저작권법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나 진술을 모아 ‘오바마 연설집' 과 같은 편집저작물을 출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저작권법 제25조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이른바 '게재이용')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 
  1. **위 학교에서 대학교는 제외된다.**
  2.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것과 교육부가 검∙인정을 한 교과서를 말한다.**
  3. **학교교육목적에 필요한 경우 시조나 단편소설 등의 전체를 게재할 수 있다.**
  4. **법원은 표준전과 사건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는 저작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 
  1.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운동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장시간 주요장면(highlights)을 보여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명잡지사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명화가 그림의 도난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도난된 그림을 양질의 종이에 칼라 인쇄로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할 수 있다.**
  4. **저작권법 제32조는 시험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시학원의 시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에 대한 설명** 
  1. **미술/사진/건축 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원본에 의하여 전시 가능하다.**
  2. **①의 경우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것은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3.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③의 경우 목록형태의 책자만 해당하며, 감상을 겸할 수 있는 화집이나 사진집과 같이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것은 금지된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설명** 
  1. **공표된 저작물을 공정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여야 한다.**
  2. **정당한 범위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용목적의 정당성/부종관계/시장적경쟁관계의 부존재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3. **부종관계라 함은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내의 이용이어야 한다. 정당한 범위내의 이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용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은 이에 해당하나 시간절약/장식용/창작력부족을 위한 것이라거나 광고나 영리적 목적의 인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설명** 
  1. **법원은 모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중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스타 UCC’ 코너에서 탤런트 이순재가 출연한 영화 저작권자 동의 없이 위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한 사안에서 공정이용을 부정하였다."**
  2. **출판물의 경우 타인의 저서를 이용 시 그 인용부분을 인용부호를 묶거나 글자체를 달리 하는 등으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3.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거나 잠재적 시장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출처의 명시는 특히 출판물의 경우 주나 각주 등의 방법으로 저작자의 이름/책의 제호/발행기관/판수/발행연도/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000의 저서를 참조하였다＂라고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명시의 정당한 관행에 합치 되지 않는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에 대한 설명** 
  1.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3. **입장료 등 반대급부를 징수하지 않을 것**
  4. **저작권법 제29조는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설명** 
  1.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영리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
  3. **저작권법 제30조는 복제의 방법 수단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금지하고 있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설명** 
  1.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은 대항요건이다.**
  4.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다(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으로 기재하여야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보며, ‘모든 저작권‘ 또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문구만으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저작권의 등록에 대한 설명** 
  1. **저작권의 등록과 저작권의 발생은 무관하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등록이 된다.**
  3.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자/ 창작일/ 공표일 등이 추정된다.**
  4.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은 그 성립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 것이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설명** 
  1. **저작재산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2.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해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
  3. **저작물이용허락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4.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도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점의 지위를 잃게 만드는 이용허락자에 대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뿐이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설명** 
  1. **양자는 채권적 권리의 설정인가 아니면 준물권의 설정인가로 구별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유사하게 된다.**
  3.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등록한 자는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자에게 이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 
  1.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조출연자가 너무 많은 경우 성명의 생략이 가능하다.**
  2. **제작이나 편집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내용의 편집이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청구요건**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비판매용 제외) 음반(비디오테이프 등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일 것**

**② 방송사업자에 의해 사용될 것(유∙무선 포함)**

**③ 방송을 하는 경우일 것(유흥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에서의 사용은 적용 X)**

**④ 청구는 실연자 단체가 일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 
  1. **가수는 전송권을 가지므로 가수의 동의 없는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불가능하다.**
  2. **실연자의 배포권에도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다만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4.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0조) 따라서 다시 가수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 
  1.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에도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다만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3. **음반제작자에게도 불법유통되는 음원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전송권)가 있다.**
  4.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며(법 제82조 제1항 본문),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별개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 
  1. **생방송 뿐만 아니라 녹음 또는 녹화물을 사용하는 방송의 경우에도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이 미친다.**
  2.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하여 광역케이블 등으로 재송신하는 것은 동시중계방송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3.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4. **방송을 녹음 또는 녹화했다가 다른 시간에 방송하는 이시중계방송 또는 인터넷 다시보기 등은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없다면 동시중계방송권이 아닌 복제권의 침해가 된다.**
*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1.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면 형사처벌 된다.**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 정보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할 수 있다.**
  4.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았으나 현재는 위 법률은 폐지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사유**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한 복제**
  2.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복제**
  3.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4. **저작권법 제101조의 3은 가정 등 한정된 곳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 목적 제외)으로 복제하는 것을 제한 사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설명**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외주 업체에 제작위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아닌 외주 업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프리웨어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함을 허락한 권리의 유보이지, 권리의 포기가 아니다.**
  4.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법 제141조)**
*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설명** 
  1. **프리서버는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된다.**
  2.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하여 광역케이블 등으로 재송신하는 것은 동시중계방송 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3. **법원은 서체파일(폰트)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복제권 침해를 인정한다.**
  4.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

**①복제의 용이성 및 양질성**

**②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침해의 광범성과 신속성**

**③ 창작의 용이성**

**④ 무형성 및 간접적 인식가능성**

**⑤ 영구적 보존가능성**

*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한 설명** 
  1.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저작물이라도 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신문사의 동의 없이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스크랩을 금지하는 저작물을 스크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다.**
  4. **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 **이른바 OPS책임과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
  1. **파일공유나 불법성이 명백한 저작물이 게시되는 등의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존재할 것**
  2.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할 것**
  3.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을 요구함**
  4.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파일공유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제한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한 설명** 
  1. **UCC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작곡가/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필요하다.**
  2. **자신의 블로그에 영화 후기(비평이나 감상 등)를 남기면서 영화의 포스터나 스틸컷을 이용하는 경우 비평이나 감상이 주된 부분이어야 한다.**
  3.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합법적으로 구매한 MP3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는 것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도록 스트리밍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송권의 침해가 된다.(즉 작곡가/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함)**
*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설명** 
  1. **그 보호법익이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가지는 인격적 가치가 아닌 재산적 가치이다.**
  2.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한다.**

* 1. **프라이버시권에서 파생되어 발전되었다.**
  2.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이나 초상권과 달리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시 재산적 손해배상만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휴대전화용 야구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하자 성명사용금지를 청구한 사안에서의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설명**

**①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②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으로 파악**

**③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

**④독립된 별개의 재산권**

*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설명** 
  1.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이 허락 없이 공개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명성을 위하여 초상이나 성명의 이용 등에 관한 개인의 권리가 일정부분 포기하였다고 간주되어 일반인에 비하여 좁게 인정된다.**
  3. **일반인의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의하여 고도의 보호를 받는다.**
  4. **법원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000 프로덕션은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00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설명** 
  1. **유명 남자 개그맨의 얼굴을 캐릭터로 제작한 후 이 캐릭터 옆에 “…. 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한 상태로 그 개그맨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다.**
  2.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계약기간 종료 후 임의로 이용하였다면 퍼블리 시티권의 침해가 된다.**
  3. **개그맨들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인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
  4. **공적 인물에 대한 전기를 쓰는 것은 유명인의 초상 및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 
  1. **저작권침해라 함은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방법이나 조건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침해가 인정된다.**
  3.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그대로 베끼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복제권의 침해가 된다.**
  4. **기존 저작물을 이용했지만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내용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저작권 침해요건 중 주관적 요건에 대한 설명** 
  1.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의거관계란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3. **의거성은 내심의 문제이므로 침해자가 피침해저작물에 대한 접근(acess)이 인정되면 의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피침해저작물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접근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의거가 추인되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고, 피침해저작물과 공통의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접근이 추정된다.**
* **저작권 침해요건 중 객관적 요건에 대한 설명** 
  1.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실질적유사성이란 침해저작물의 표현형식이 피침해저작물의 표현형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의미한다.**
  3. **소송에서 보통 비교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대응 부분에 따라 표현형식이 동일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을 대비하여 주장∙입증을 하게 된다.**
  4. **비교대조의 대상은 아이디어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침해저작물의 표현형식과 피침해저작물의 표현형식의 실질적으로 유사성이다.**
* **저작권 침해의 구제에 대한 설명** 
  1.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가처분 등 사전적 예방구제수단이 존재한다.**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하더라도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된다.**
  3.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바, 저작권법은 대부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4. **사죄광고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남으로써 현재는 사죄광고 형태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요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설명이다.**
* **저작재산권은 작성권과 공중전파권으로 나뉘는데 공중전파권에 해당하는 것**
  1. **공중송신권**
  2. **전시권**
  3. **공연권**
* **공연권에 대한 설명**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 **공중송신권에 대한 설명**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다음의 설명이 의미하는 권리는?**

* **저작인접권에 대한 설명**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